

의안번호	2200533
의 퇴 인	송기헌 의원
회 답 일	2024. 8. 19.
추 계 번호	24A1003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2제2항 (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)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면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음 (제1항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의2제2항 (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)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①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, ②폐업한 경우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공단”)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현행법 제22조제3항1)에 따라 기금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정책 자금을 대출(직접대출 및 대리대출²⁾)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

* [참고자료 1]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현황

-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른 장기분할상환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,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유예 제도는 「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

* [참고자료 2]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지원 현황

-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①장기분할상환 제도를 신설하고, ②현재 운영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

1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③ 기금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)의 관리·운용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2) 참고: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비교

구분	직접대출(Direct Loan)	대리대출(On Lending)
개념	· 정부(또는 기금관리주체)가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대상(소상공인)을 선별하고 직접 융자해주는 방식	· 금융기관이 일정수수료(1% 내외)를 받고 정부(또는 기금관리주체)의 융자업무를 대리하는 방식(보증기관 보증서 필요)
장점	· 정책자금 취지에 맞는 지원대상(특히 저신용자 위주) 선별 가능 · 지원조건 설정 및 변경 용이 · 소상공인 대출절차 및 서류간소화 · 보증수수료(1% 내외) 부담 감소	·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 최소화(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서 부실관리)
단점	·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분의 재정 충당(보조) 필요 · 직접대출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(조직 운영, 인건비, 시스템 관리 등)	· 정책자금의 효율적 통제 및 관리 한계 ·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채권 회수 중심의 운용방식으로 저신용자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 ·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(1% 내외) · 은행수수료 발생(1% 내외)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의 경우 현재 이미 운영 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해당하지 않음
- 다만, 장기분할상환 제도는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, 운영될 경우
 - ①용자 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한 회수 실적이 저하되어 기금수입이 감소하거나, ②금융기관의 채권 관리 부담 증가로 인해 수수료율이 인상되어 기금지출이 증가할 가능성³⁾
 - 용자 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한 회수액은 기금수입⁴⁾으로 수납되는데,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대출채권 미회수 위험으로 회수 실적이 저하되어 기금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
 - 또한,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, 이 경우 대리대출 제도 운영 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금의 사업비⁵⁾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
 - 직접대출과 달리 대리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의 일부(1% 내외)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용자업무를 대리하는 방식이므로 상환기간 연장 시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
 - 만약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채권의 위험도나 채권 회수를 위한 관리 비용이 증가하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므로 기금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잔액 중 장기분할상환 승인 예상액, ②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대출채권의 회수율 하락분, ③대리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상분과

3) 엄밀한 의미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채권의 위험 및 관리 부담 증가에 따른 제반 비용과 이자수입 및 상환조건 등을 바탕으로, 장기분할상환 승인 전후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산출할 수 있음. 다만, 현 시점에서 이를 추계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, 여기에서는 재정부담의 증가(재정수입의 감소 및 재정지출의 증가)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만을 설명함

4) 직접대출의 원금은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(754) 목, 이자수입은 기타민간이자수입(544) 목으로 수납
대리대출의 원금은 통화금융기관용자원금회수(752) 목, 이자수입은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(542) 목으로 수납

5) 대리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(용자)(4151-301)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

함께 ④장기분할상환 승인액에 대한 상환 스케줄 등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나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대출채권 회수 실적 저하에 따른 기금수입 감소액의 경우 장기분할상환 승인된 대출잔액 중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나, 대출잔액 중 장기분할상환 승인액의 비율(장기분할상환 신청 수요 및 승인율)과 대출채권의 연도별 회수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 감소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 부담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는 데 따른 기금지출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기분할상환 제도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지출 증가분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나, 수수료 인상폭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제도를 운영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현황

구 분	예산(억원)	지원대상	대출한도	대출금리
소 계	37,100	-	-	-
① 일반경영안정자금	11,100	-	-	-
- 일반자금	11,100	업력 무관 소상공인	7천만원	기준금리 +0.6%p
② 특별경영안정자금	18,000	-	-	-
- 청년고용연계자금	1,500	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, 청년 고용 소상공인	7천만원	기준금리
- 저신용소상공인자금	4,000	저신용 소상공인	3천만원	기준금리 +1.6%p
- 제도전특별자금	2,500	제도전, 재창업 및 채무조정, 성 실상환 소상공인	7천만원	기준금리 +1.6%p
- 긴급경영안정자금	4,500	채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	1억원	고정 20%
		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	7천만원	기준금리
- 장애인기업지원자금	500	장애인기업	1억원	고정 20%
- 대환대출	5,000	중·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의 7%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만기연장 등 자체 채무조정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	5천만원	고정 45%
③ 성장기반자금	8,000	-	-	-
- 소공인특화자금	5,000	업력 무관 소공인	시설 5억원 운전 1억원	기준금리 +0.6%p
- 혁신성장촉진자금	2,600	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기술 도입 소상공인	(혁신형) 시설 10억원 운전 2억원 (일반형)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	기준금리 +0.4%p
-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	400	민간 투자자의 투자·펀딩을 받은 소상공인	5억원	기준금리 +0.4%p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[참고자료 2]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지원 현황

□ 추진배경

- 소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출금 일시 상환을 유보하여, 폐업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완화와 재기 지원('15~)

□ 지원대상 및 근거

- (지원대상)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을 보유한 폐업 소상공인 중 대출금을 정상 상환 중인 자
- (지원근거) 소진공 「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(내규)」

□ 지원실적

- 폐업한 소상공인 보유대출 155,870건(8,779억원)*에 대하여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유예 지원 중
('24년 5월말 직접대출 잔액기준)

* 90일 이상 연체, 채무조정 등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65,570건(7,673억원) 제외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